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86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허종식·이훈기·김교흥

노종면 • 유동수 • 정일영

김정호 · 김동아 · 허성무

이재관 • 윤준병 • 박찬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자동차의 품질과 이미지가 향상됨에 따라 매년 중고자동 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중고자동차 수출은 약 64만 대, 수출액 6조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수출 업은 행정관청의 허가나 등록·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금까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 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중고자동차 수출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함께 정비·튜닝·부품공급·쇼링, 금융 등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수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자동차 서비 스 복합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중고차 수출업을 위한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육성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를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수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수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수출하는 자에게"를 "자동차수출업자에게"로 한다.

제58조제6항제1호의2 중 "수출하는 자에게"를 "자동차수출업자에게"로 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자동차수출업의 등록) ①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수출하는 사업(이하 "자동차수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수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수출업"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 3"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한다)"는 "자동차수출업자"로 본다.

제68조의9제1항 중 "매매,"를 "매매, 수출(신조차와 이륜차의 수출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제3항제5호 중 "수출하는 자에게"를 "자동차수출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수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 (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수출하고 있는 자는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동차수출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수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말소등록) ① (생 략)	제13조(말소등록)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②
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u>자동차를 수출하는 자</u>	<u>제65</u> 조의3제1항에 따라
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	자동차수출업의 등록을 한 자
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이하 "자동차수출업자"라 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	<u>다)</u>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	,
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 ①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
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생	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②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	
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	

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7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생 략)
 -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다.
 - 1. (생략)
 -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 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 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 2. ~ 5. (생략) ⑦ ~ ⑩ (생 략) <신 설>

자동차수출업자에게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자동차수출업자에게-
<u>/ U / 1 已 日 / リ/リ</u>
2 ~ 5 (혀행과 같음)

- (7) ~ (10)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자동차수출업의 등록) ①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 차는 제외한다)를 수출하는 사 업(이하 "자동차수출업"이라 한 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 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 차의 등록, <u>매매</u>,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 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 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 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 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수출업자의 결격사유 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은 "자동차수출업"으로, "제53 조"는 "제65조의3"으로, "자동 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 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 다)"는 "자동차수출업자"로 본 다.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 립) ① ----------매매, 수출(신조차 와 이륜자동차의 수출은 제외 한다),-----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② (생	제8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5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u>수출하는</u>	<u>자동차수</u>
<u>자에게</u> 판매한 자	<u>출업자에게</u>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